

2016.01.18

## 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

이전에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(지정기간 2년)받은 후 계속 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, 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개정으로 세관장이 지정기간 만료 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, 월별납부업체가 2년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갱신이 이루어집니다.

###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-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,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'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
-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,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
- **시행일자 : 16. 1. 15.(금)**

### 주요내용

- ①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(제4조)  
\* (기존)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
→ (변경)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
- ②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(제7조)
- ③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(제12조)